■ 공직선거관리규칙 [별표 5] (규칙 제146조의6제1항 관련) <개정 2023. 7. 31.>

# 신체장애등급표

| 장애등급 | 신체장애의 정도 |
|---|---|
| 제1급 | 1. 두 눈이 실명된 사람<br>2.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<br>3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<br>4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<br>5.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<br>6.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<br>7.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<br>8.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|
| 제2급 | 1.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02 이하로 된 사람<br>2. 두 눈의 시력이 0.02 이하로 된 사람<br>3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<br>4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<br>5.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<br>6.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|
| 제3급 | 1.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06 이하로 된 사람<br>2.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<br>3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<br>4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<br>5.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|
| 제4급 | 1. 두 눈의 시력이 0.06 이하로 된 사람<br>2.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<br>3.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<br>4.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<br>5.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<br>6.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<br>7.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(족근중족관절) 이상에서 잃은 사람 |
| 제5급 | 1.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1 이하로 된 사람<br>2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<br>3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 |

| | |
|---|---|
| | 지 못하는 사람<br>4.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<br>5.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<br>6.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<br>7.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<br>8.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|
| 제6급 | 1. 두 눈의 시력이 0.1 이하로 된 사람<br>2.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<br>3.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4.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br>가. 척주(脊柱)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나.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6.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<br>7.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<br>8.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|
| 제7급 | 1.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6 이하인 사람<br>2.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3.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4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<br>5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<br>6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<br>7.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<br>8.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(족근중족관절) 이상에서 잃은 사람<br>9. 한 팔에 가관절(假關節,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)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<br>10.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<br>11.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<br>12.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<br>13.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<br>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
| | |
|---|---|
| | 가.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나.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다.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라.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|
| 8급 | 1.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로 된 사람<br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br>가.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<br>나.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다.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라.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마.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바.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3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<br>4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<br>5.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<br>6.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<br>7.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<br>8.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<br>9.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<br>10.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<br>11.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|
| 9급 | 1. 두 눈의 시력이 0.6 이하로 된 사람<br>2. 한 눈의 시력이 0.06 이하로 된 사람<br>3. 두 눈에 반맹증·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<br>4.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<br>5.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<br>6.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<br>7.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8.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<br>9.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<br>10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<br>11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<br>12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<br>13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<br>14.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<br>15.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<br>16.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|

| | |
|---|---|
| | 1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br>가.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<br>나.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다.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라.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마.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바.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<br>18.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|
| 10급 | 1. 한 눈의 시력이 0.1 이하로 된 사람<br>2.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<br>3.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<br>4.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<br>5.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<br>6.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<br>7.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8.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<br>9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,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<br>10.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<br>11.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<br>12.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<br>13.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<br>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br>가.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<br>나.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<br>다.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라.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마.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|
| 11급 | 1.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<br>2.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<br>3.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<br>4.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<br>5.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6.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7.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<br>8.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<br>9.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|

| | |
|---|---|
| | 10.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<br>11.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<br>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br>가.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<br>나.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<br>다.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라.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<br>마.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<br>13.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<br>14.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<br>15.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|
| 12급 | 1.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<br>2.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<br>3.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<br>4.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<br>5.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<br>6.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<br>7. 한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<br>8. 빗장뼈(쇄골)·복장뼈(흉골)·갈비뼈(늑골)·어깨뼈(견갑골)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<br>9.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<br>10.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<br>11. 팔과 다리의 긴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<br>12.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<br>13.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,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<br>14.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<br>15.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<br>16.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,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<br>17.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<br>18.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|
| 13급 | 1. 한 눈의 시력이 0.6 이하로 된 사람<br>2. 한 눈에 반맹증·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<br>3.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<br>4. 한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<br>5.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<br>6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<br>7.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<br>8.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<br>9.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|

| | |
|---|---|
| | 10.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<br>11.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,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<br>12.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<br>13.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<br>14.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<br>15.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|
| 14급 | 1.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<br>2.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<br>3.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<br>4.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<br>5.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<br>6.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<br>7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<br>8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<br>9.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<br>10.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<br>11.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|
| ※ 비고: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. | |